

의안번호	제 8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3. (제 회)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3. 7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8
번호	

제출일자 : 1997. 3. 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환경부훈령 제294호, '95. 5. 4)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요율 및 업종구분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하수도
사업 투자 및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2. 주요골자

가.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정기(2년1회이상) 및 수시
실시를 의무화하는 하수관거 준설조항 신설.(안 제8조)

나. 수도급수량을 하수도배출량으로 보는 하수배출량 인정 조항과
100톤이상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율인상과 업종을 변경하고, 조사방법을 세분화
하며, 일시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명시함.

(안 제10조 및 제13조)

(1) 하수사용료 부과 업종 변경

- 현행 : 5종(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 개정 : 9종(일반용, 영업1·2종, 욕탕1·2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2) 일반용 구간의 축소(5개구간 → 4개 구간)

- 현행 : 월기본(10m³), 11-30m³, 31-50m³, 51-100m³, 101m³이상
- 개정 : 월기본(10m³), 11-30m³, 31-50m³, 51m³이상

(3) 요율인상 : 평균 9.9% 인상(최소 : 6.67%, 최고 : 12.5%인상)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공공하수도 계획수량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 하게 될 때에는 시설설치 부담을 2분의 1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상범위(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등)의 구체적 조항 명시

(안 제15조)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배수설비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 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당해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사천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를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수도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하수과와 수도과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지설지구등),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당해 시의 해당 건축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

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
하여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
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
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
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하 수 도 사 용 요 율 표

구 분 업 종		1개월기본요금		초과사용요금				
		기본하수량 (㎡/월)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일 반 용		10	320	11 - 30 31 - 50 51 이상	43 55 90			
영 업 용	1 종	10	350	11 - 30 31 - 50 51 이상	45 60 100			
				2 종	10	380	11 - 30 31 - 50 51 - 100 101 - 500 501 이상	49 62 100 180 190
	목 탕 용	1 종	1㎡당 원	44				
2 종		200	25,0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	160 190 210			
공 공 용		1㎡당 원	44					
공 중 용		1㎡당 원	33					
산 업 용		1㎡당 원	48					
일시사용		1㎡당 원	88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자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금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별표 2 】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일 반 용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공용급수전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 에 대한 급수
영 업 용	1 종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2 종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관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제외)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폐, 식목업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 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 업 용	2 종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제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 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1 종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 탕 용	2 종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림과 연계하여 운영 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1 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 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 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공 공 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 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 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공 중 용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산 업 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별표 3 】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 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text{수질하수도 사용료} = \text{오염부하량} [\text{수질초과농도mg/ℓ}] \times \text{시간당 폐수배출량(m}^3\text{)} \times \frac{1}{1000} \times \text{kg 단가} \times \text{1일조업시간} \times \text{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 별표 4 】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 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 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 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 표준액 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 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 액의 100분의 8

【 별표 5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square \text{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 \text{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begin{aligned}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³/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m³/일)}} \times \alpha \end{aligned}$$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begin{aligned} - \text{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text{하수관거총사업비} \times \\ &\frac{\text{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m³/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³/일)}} \times \alpha \end{aligned}$$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배물가상승율}}{100} \right)^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 년수